

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 자격검증 제출 서류 안내

■ 자격확인 서류 제출 안내

- 서류접수 예약기간 : 2021.7.8(목) ~ 7.18(일)
- 서류접수 방문기간 : 2021.7.9(금) ~ 7.18(일) / 10:00 ~ 16:30

※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당첨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, 재당첨제한 등에 관련된 부적격 내용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.

■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서약서	본인	·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(무주택 입증 서류를 서약서로 대체)
	○		자금조달계획서	본인	·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※ 모든 주택형 제출
	○		인감도장	본인	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서명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 용도 아파트 계약용 ※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, 대리발급분은 불가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, 서명인증서(외국인에 한함)
	○	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.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통)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	○	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, ※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표기하여 '상세'로 발급 ※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청약신청자와의 관계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필수 제출 ·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※ 발급기간 및 기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)
		○		직계존속	·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개년도 발급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)
		○		직계비속	·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)
해당자	○		해당기관장의 추천서	본인	·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합니다.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·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 (본인발급용)	청약자	· 용도 : 아파트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,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 에 대한 공정증서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·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
	○		위임장	청약자	·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(당사 견본주택 비치)
	○	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대리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) ·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(21.06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'상세' 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
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자격검증 제출 서류 안내

■ 자격확인 서류 제출 안내

- 서류접수 예약기간 : 2021.7.8(목) ~ 7.18(일)
- 서류접수 방문기간 : 2021.7.9(금) ~ 7.18(일) / 10:00 ~ 16:30

※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당첨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, 재당첨제한 등에 관련된 부적격 내용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.

■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서약서	본인	·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(무주택 입증 서류를 서약서로 대체)
	○		자금조달계획서	본인	·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※ 모든 주택형 제출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 용도 아파트 계약용 ※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, 대리발급분은 불가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, 서명인증서(외국인에 한함)
	○		인감도장	본인	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서명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
	○	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.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통)
	○	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, ※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표기하여 '상세'로 발급 ※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청약신청자와의 관계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필수 제출 ·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※ 발급기간 및 기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)
		○		직계존속	·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개년도 발급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)
		○		직계비속	·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)
해당자		○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·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 제출 ※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.
	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· 입양의 경우
		○	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·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	○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· 청약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·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,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
		○		배우자	·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·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
		○	기본증명서	피부양 직계비속	·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, 자녀	·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·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 ·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·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 (본인발급용)	청약자	· 용도 : 아파트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,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 에 대한 공정증서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·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
	○		위임장	청약자	·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(당사 견본주택 비치)
	○	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대리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) ·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(21.06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'상세' 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
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검증 제출 서류 안내

■ 자격확인 서류 제출 안내

- 서류접수 예약기간 : 2021.7.8(목) ~ 7.18(일)
- 서류접수 방문기간 : 2021.7.9(금) ~ 7.18(일) / 10:00 ~ 16:30

※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당첨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, 재당첨제한 등에 관련된 부적격 내용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.

■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서약서	본인	·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(무주택 입증 서류를 서약서로 대체)
	○		자금조달계획서	본인	·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※ 모든 주택형 제출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 용도 아파트 계약용 ※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, 대리발급분은 불가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, 서명인증서(외국인에 한함)
	○		인감도장	본인	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서명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
	○	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.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통)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	○	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, ※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 ※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청약신청자와의 관계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혼인신고일 확인,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필수 제출 ·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※ 발급기간 및 기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)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	·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 ※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
	○		소득증빙 서류		·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전원의 소득입증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)
해당자		○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·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 제출 ※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.
		○	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· 입양의 경우
		○	기본증명서	피부양 직계비속	·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
		○	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·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
		○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	·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·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 (본인발급용)	청약자	· 용도 : 아파트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,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 에 대한 공정증서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·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
			위임장	청약자	·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(당사 건본주택 비치)
	○	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대리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) ·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(21.06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'상세' 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
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검증 제출 서류 안내

■ 자격확인 서류 제출 안내

- 서류접수 예약기간 : 2021.7.8(목) ~ 7.18(일)
- 서류접수 방문기간 : 2021.7.9(금) ~ 7.18(일) / 10:00 ~ 16:30

※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당첨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, 재당첨제한 등에 관련된 부적격 내용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.

■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0		서약서	본인	·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(무주택 입증 서류를 서약서로 대체)
	0		자금조달계획서	본인	·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※ 모든 주택형 제출
	0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 용도 아파트 계약용 ※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, 대리발급분은 불가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, 서명인증서(외국인에 한함)
	0		인감도장	본인	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서명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
	0	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.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통)
	0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	0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, ※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0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0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 ※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청약신청자와의 관계
	0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·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필수 제출 ·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※ 발급기간 및 기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)
		0		직계존속	·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개년도 발급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)
		0		직계비속	·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)
해당자	0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·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
		0		피부양 직계비속	·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
		0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·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,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표 기하여 "상세"로 발급
		0		배우자	·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
		0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, 자녀	·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 ·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	0	복무확인서	본인	·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0		인감증명서 (본인발급용)	청약자	· 용도 : 아파트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,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 에 대한 공정증서
	0		인감도장	청약자	·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
	0		위임장	청약자	·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(당사 건본주택 비치)
	0	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대리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) ·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(21.06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'상세' 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
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검증 제출 서류 안내

■ 자격확인 서류 제출 안내

- 서류접수 예약기간 : 2021.7.8(목) ~ 7.18(일)
- 서류접수 방문기간 : 2021.7.9(금) ~ 7.18(일) / 10:00 ~ 16:30

※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당첨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, 재당첨제한 등에 관련된 부적격 내용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.

■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0		서약서	본인	·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(무주택 입증 서류를 서약서로 대체)
	0		자금조달계획서	본인	·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※ 모든 주택형 제출
	0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 용도 아파트 계약용 ※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, 대리발급분은 불가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, 서명인증서(외국인에 한함)
	0		인감도장	본인	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서명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
	0	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.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통)
	0	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	0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, ※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0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0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 ※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청약신청자와의 관계
	0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/자녀	·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·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"상세"로 발급
	0		소득증빙 서류	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	·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·비속의 소득 입증서류)
	0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	·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
	0		소득세 납부	본인	·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(5년 이상)
	0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필수 제출 ·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※ 발급기간 및 기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)
해당자		0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직계존속	·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 "전체 포함" 으로 발급)
		0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 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· 입양의 경우
		0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	·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
		0	복무확인서	본인	·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0		인감증명서 (본인발급용)	청약자	· 용도 : 아파트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,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 에 대한 공정증서
	0		인감도장	청약자	·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
	0		위임장	청약자	·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(당사 견본주택 비치)
	0	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대리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) ·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(21.06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'상세' 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
일반공급(가점제) 자격검증 제출 서류 안내

■ 자격확인 서류 제출 안내

- 서류접수 예약기간 : 2021.7.8(목) ~ 7.18(일)
- 서류접수 방문기간 : 2021.7.9(금) ~ 7.18(일) / 10:00 ~ 16:30

※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당첨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, 해당첨제한 등에 관련된 부적격 내용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.

■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0		서약서	본인	·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(무주택 입증 서류를 서약서로 대체)
	0		자금조달계획서	본인	·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※ 모든 주택형 제출
	0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 용도 아파트 계약용 ※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, 대리발급분은 불가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, 서명인증서(외국인에 한함)
	0		인감도장	본인	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서명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
	0	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.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통)
	0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	0	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, ※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0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0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 ※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청약신청자와의 관계
	0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, 자녀	·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 ·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0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필수 제출 ·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※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)
		0		직계존속	·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개년도 발급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)
		0		직계비속	·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)
해당자	0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·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
	0			피부양 직계비속	·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
	0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·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,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표 기하여 "상세"로 발급
	0			배우자	·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
	0		복무확인서	본인	·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0		인감증명서 (본인발급용)	청약자	· 용도 : 아파트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,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 에 대한 공정증서
	0		인감도장	청약자	·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
	0		위임장	청약자	·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(당사 견본주택 비치)
	0	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대리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) ·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(21.06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'상세' 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
일반공급(추첨제) 자격검증 제출 서류 안내

■ 자격확인 서류 제출 안내

- 서류접수 예약기간 : 2021.7.8(목) ~ 7.18(일)
- 서류접수 방문기간 : 2021.7.9(금) ~ 7.18(일) / 10:00 ~ 16:30

※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당첨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, 재당첨제한 등에 관련된 부적격 내용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.

■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서약서	본인	·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(무주택 입증 서류를 서약서로 대체)
	○		자금조달계획서	본인	·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※ 모든 주택형 제출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 용도 아파트 계약용 ※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, 대리발급분은 불가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, 서명인증서(외국인에 한함)
	○		인감도장	본인	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서명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
	○	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.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통)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	○	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, ※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 ※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청약신청자와의 관계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·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필수 제출 ·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※ 발급기간 및 기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)
해당자		○	복무확인서	본인	·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 (본인발급용)	청약자	· 용도 : 아파트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,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 에 대한 공정증서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·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
	○		위임장	청약자	·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(당사 견본주택 비치)
	○	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대리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) ·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(21.06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'상세' 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